

이 보도자료는 2024. 5. 6.(월)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h2 style="text-align: center;">서울동부지방검찰청</h2>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만홍 전화 02-2204-4201</p>	<h2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2> <p style="text-align: center;">2024. 5. 6.(월)</p>
<h3 style="text-align: center;">제 목</h3>	<h2 style="text-align: center;">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 범죄수익환수 - 판결 확정시 사기 피해자 156명에게 피해회복 예정</h2>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당 424만 원)를 2024. 5. 1.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습니다.

* Mnemonic code(니모닉코드),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12~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보안비밀문구

주요 재판 경과

- ▶ 피고인은 2023. 7. 13. 1심에서 피해자 156명에 대한 146억 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 1,796개를 취득한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 2024. 1. 25.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 1,796개를 취득한 범행을 포함하여 징역 16년을 선고하였으며,
 -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이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더리움의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시 이더리움 1,796개 가액인 53억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 ▶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 ※ 검찰은 기소한 범죄가 전부 유죄선고되어 상고 포기하였음

-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정이 복구되지 않자,
 -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재차 복구를 시도**한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은 계정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하였습니다.
 -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투자자 156명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더리움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해자 156명에게 이더리움을 환부하여 피해 회복할 예정임

1 공소사실 요지 및 재판 경과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남, 50세), 프로그래머
-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① 2019. 8. 12.경 ‘비트코인을 주면 A회사로부터 게임의 소스코드를 받아서 개발한 게임의 저작권을 갖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회사를 기망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57.65개의 비트코인을 교부받아 [특경법위반(사기)]
② A회사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2019. 1.~2.경 ‘00코인은 상장이 확정되어 있고, 00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교부받아 [특경법위반(사기)]
③ 피고인은 피해자 A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 및 사업비용 26억 5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특경법위반(횡령)]
④ 피고인은 피해자 A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27.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0x4D1~’)으로 전송하여 [특경법위반(배임)] ⇨ 본건 압류 관련 부분

* 범행시 약 6억 원, 항소심 선고시 약 53억 원, 압류시 약 76억 원으로 시가가 범행시보다 약 1,267% 상승하였음

② 재판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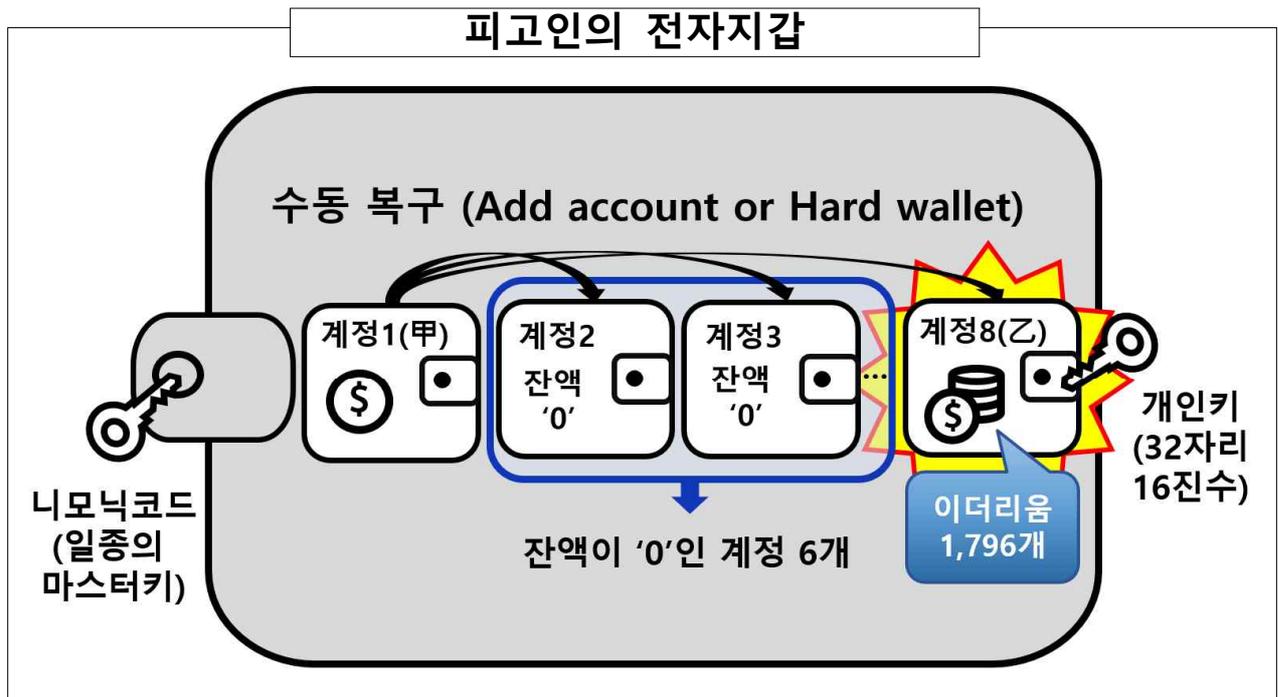
- '23. 7. 13. 서울동부지법, 징역 15년 선고(일부 무죄 : 특경범위반(배임)은 무죄)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불상의 이유로 삭제되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밀복구구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
 - 1심은 피고인이 비밀복구구문을 분실한 것을 전제로 이더리움의 보관 장소만 변경한 것이므로 배임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
- '24. 1. 25. 서울고등법원 징역 16년 선고(전부 유죄 : 특경범위반(배임) 포함)
 - 2심은 피고인이 이더리움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전자 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유죄 선고
 - 한편,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판결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의 시가인 5,389,623,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음
-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 * 피고인 상고, 검사 상고 포기(기소한 범죄에 대하여 전부 유죄가 선고가 되었으므로)

2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복구 및 압류

①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복구

- 검찰은 피고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 전자지갑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관리되는데, 수사 당시 복구를 시도한 A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지갑에 1개의 계정만 둘 수 있어 첫 번째 계정 甲만 복구되었고,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 계정 乙은 복구되지 않았으나,
 - 복구된 계정 甲에서 이 사건 삭제된 전자지갑 계정 乙로 이더리움 1,796개가 이전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지갑에 복수의 계정을 둘 수 있는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습니다.

- B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구문을 입력하자 계정 甲만 자동으로 복구되고 그 이후에 생성된 계정들은 복구되지 않았으나,
 - B 소프트웨어는 잔액이 '0'인 계정을 만나면 그 이후 계정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생성한 계정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동으로 계속하여 계정을 복구한 끝에 8번째 계정에 들어있던 본건 이더리움을 발견하였습니다.



[(좌)비밀백업구문 예시, (우)피고인의 B 소프트웨어 전자지갑]

2 대법원에 몰수 신고 요청 및 이더리움 압류

- 이 사건 이더리움의 향소심 재판 선고 당시의 시가는 약 53억 원 상당이었으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하여 종전 추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약 23억 원 상당)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데,
 -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하여 몰수를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입니다.
-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특징, 최근 가상자산의 시세변동 등에 비추어 이더리움이 탈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수 신고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 1,796개 전부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였습니다.

검찰청 명의 거래소 계정 개설

- ▶ '18. 1.경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법인 명의 계정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 ▶ 2023. 12.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금융기관 협의에 따라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개설, 압류에 사용 가능하게 되었음
- ▶ 과거에는 가상자산을 검찰수사관 개인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매각, 현금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위 협의에 따라 검찰청 명의 계정 개설을 통한 신속한 국고 귀속 절차를 마련,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졌음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P2P(peer to peer, 개인간 금융거래 방식) 거래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므로 보완이 필요함

- * 민사집행법에는 가상자산의 취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자가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이전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가 가상자산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협조가 없는 한 강제 이전이 불가능함

3

의의 및 향후 계획

- 검찰이 집행기관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 및 압수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 ① 기존에 압수해서 비트코인 복구를 해냈던 비밀복구구문을 사용, ② A소프트웨어로는 복구하지 못 했으나, ③ 다른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보고, ④ 자동복구에서 복원되지 않았으나 ⑤ 수동복구를 시도하고, ⑥ 수동복구에서도 바로 복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구를 시도하여
 - 은닉될 뻔한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안으로
 - 개인지갑 압류 최초 사안이라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절차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 중점청으로서, 전문 인력 및 전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죄수익금인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